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 는 20○○. ○. ○. ○○군에서 만기 20○○. ○○. ○. 지급지 ○○군 ○○읍 ○○○으로 된 액면 금 8,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자신이 기명 날인을 하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 그 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배서를 원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금 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ı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조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인지액 : ㅇㅇㅇ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비 용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		
	여야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		
기 타	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		
	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		
	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어음은 제시		
	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		
	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		
	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		
	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		
	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대법		
	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		
	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		
	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		
	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		
	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		
	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		
	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어음 ·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